1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반영 미흡

산업부는 균형발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계획안과 17개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 발전계획을 통합하고, 지역위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14. 12. 2. 2차 5개년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위는 균형발전법 제22조, 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4. 4. 4.「2차 5개년계획 수립지침」(산업부)과 같은 해 11. 12. 2차 5개년계획을 심의하였고, 2016년 11월 현재까지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지역발전사업 관련 계획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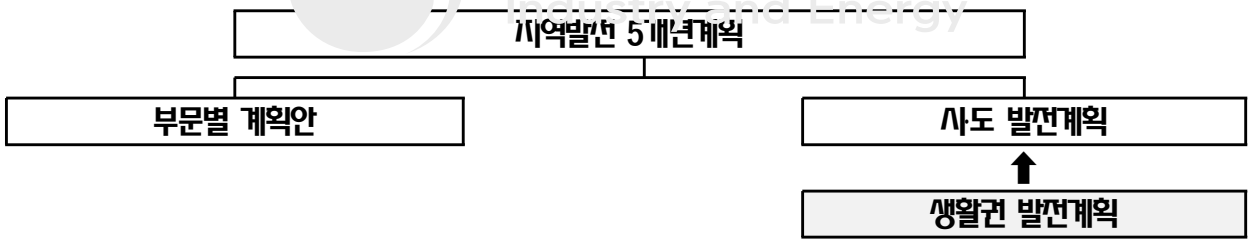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2014. 1. 7. 개정된 균형발전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2차 5개년계획에 '생활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시·군 주도로 수립된 생활권 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생활권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2차 5개년계획 수립지침」(산업부, 2014년 4월)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생활권 가이드라인[1](지역위, 2013. 10. 30.)에 따라 생활권을

1) 대통령 주재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위가 생활권 가이드라인을 마련·제공하기로 결정, 생활권 가이드라인은 지역위가 중앙부처,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고, 균형발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위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범부처 차원의 지침으로, 생활권 구성,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생활권 협력사업 추진 등과 관련된 개념, 절차, 관련기관 간 역할(지역위, 중앙부처, 지자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김경순 / 감사담당관 / 2017-04-23 19:07:20

구성한 후 생활권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생활권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산업부는 이를 기초로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위는 생활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 시·도 발전계획에 생활권 발전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부는 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이 지연되는 경우 2차 5개년계획 수립 일정을 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이후로 조정하거나, 위 2차 5개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생활권 발전계획을 나중에 반영하여 변경·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그리고 지역위 [illegible]개년계획이 수립된 2014. 12. 2. 지자체가 이미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도 발전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으며,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을 때에는 「2차 5개년 수립지침」 및 2차 5개년계획을 심의하면서 산업부에 계획수립 일정의 조정이나 사후 변경·보완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지자체별 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현황(63개 생활권)과 각 지자체가 생활권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 발전계획에 반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채 2014년 4월(날짜 모름) 중앙부처와 시·도에 같은 해 5월 중으로 부문별 계획안과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2차 5개년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2014. 12. 2. 중앙부처와 시·도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안 및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2차 5개년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지역위가 2014. 4. 4.「2차 5개년계획 수립지침」을 심의할 때에 춘천권 등 2개 생활권 발전계획만 수립된 상태였고, 같은 해 11월 2차 5개년계획을 심의할 때에 춘천권, 경남 서북부권 등 15개 생활권 발전계획만 수립된 상태였는데도, 지역위는 산업부에 2차 5개년계획 수립 일정의 조정이나 추후 수립되는 생활권 발전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업부와 지역위는 2016년 11월 말 현재까지 수립된 63개 생활권 발전계획(1개는 수립 중)을 반영하여 2차 5개년계획을 변경·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총 63개 생활권 중 48개 생활권의 경우 2차 5개년계획이 확정된 2014. 12. 2. 이후 신규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등 생활권 발전계획은 대부분 법정계획(지역발전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2]보다 늦게 수립되어 시·도 발전계획은 물론 2차 5개년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표 16]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시기

(단위: 개)

구분	계	2014. 11월까지	2014. 12월	2015. 1월 이후
개수	63	15	11	37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또한, 위 분석결과(p.16~20. 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생활권 발전계획 사업내역 분석 참조)와 같이 2차 5개년계획의 지역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권 개념을 기초로 한 생활권 협력사업이 2차 5개년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

2) 생활권 발전계획도 균형발전법 제7조의2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나, 지역발전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과 달리 수립 여부가 자율적인 임의계획의 성격을 가짐

고, 이에 따라 2차 5개년계획에 포함된 전체 266개 단위사업 중 생활권 협력사업의 비중은 8.3%(22개)에 그치는 등 실제 추진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부는 지역발전계획 수립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을 계획수립 전·후에 발굴·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생활권 발전계획이 지역발전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수정·보완조치하고, 신규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 계획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역위, 지역정책 전문가와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한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